2007. 2.

條例案審査報告書

○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 례 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007.1.26	2007.1.30	2007.2.2	2007.2.2	총무과장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31	2007.1.31	2007.2.2	2007.2.2	〃
충주시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1.26	2007.1.30	2007.2.2	2007.2.2	주민생활 지원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 매년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함(안 제14조)

나.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엘리시아아파트 사업 지역 및 주변 지역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구역 법정동간(교현동, 안림동, 연수동) 경계변경
- 엘리시아아파트 사업 지역내
  · 충주시 교현동 2필지(728㎡)를 안림동으로 편입
  · 충주시 연수동 2필지(569㎡)를 안림동으로 편입
- 엘리시아아파트 주변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
  · 충주시 교현동 5필지(511㎡)를 안림동으로 편입

다.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부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추가(안 제2조)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대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준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거주외국인에 대해 주민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였고 '충주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 또한 충주시가 5월 21일로 정한 '외국인의 날'은 입법계류중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의 '세계인의 날'을 취하여 정한 것으로 상급기관과 행사시기를 같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각종 행사를 치르는데 적합한 시기이므로 이 날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려 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외국인의 날'이 내국인과 대칭되는 의미로 받아 들여져 본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바 기본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내외국인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의미의 '세계인의 날'로 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1997년에 819명이던 우리시의 외국인 수는 2006년 12월 현재 1,6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 및 국제 혼인 등의 영향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본 조례안이 입안된 것은 국제사회의 세계화 추세에 호응하는 바람직한 일이며

○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인적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 조례안은 엘리시아아파트 단지 일대가 교현동과 연수동, 안림동 등 3개동의 경계가 혼재해 있으므로 이를 1개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 엘리시아아파트 단지 일대의 토지는 모두 26필지로 이중 안림동 17필지, 연수동 2필지, 교현동 7필지로 대부분이 안림동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아파트 부지의 대부분이 안림동 지번인데다 인근 지역도 모두 안림동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몇몇 필지에 불과한 연수동과 교현동 지번을 안림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조례안과 같이 지번이 변경될 경우 동경계가 도로를 따라 정해지므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시에 설치해야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관한 심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우선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 본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인가에 대해서도 본 협의체의 본래 기능이 지역사회복지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므로 업무적인 면이나 인적구성 등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본 조례안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 기능을 대신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행에 있어 일관성 유지는 물론 사업간 연계성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질의 : 외국인의 대표가 자문위원으로 위촉 가능한가?
○답변 : 외국인 위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 무술축제 등에 외국인 자원봉사단체를 운용할 수 있는가?
○답변 : 검토하겠습니다.

나.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 음"

다.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 음"

5. 심사결과

가.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조례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제14조의 '외국인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수정함

나.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다.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조문을 간결히 하고자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함

6. 붙 임

가.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1부
나.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다.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